

의안번호	제 15호
의결연월일	1999. . .

의결사항

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연월일	1999. 3. 3

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5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1999. 7. 3.

제출자 : 사 천 시 장

1. 개정이유

시대의 변화에 따른 명칭변경과 인용조항이 맞지않는 일부조항을 바로잡으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제4조를 제3조로 한다(안 제2조제6호)

나. 국민학교를 초등학교 로 한다(안 제2조제10호)

3. 개정조례(안) : 별첨.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중 “제4조”를 “제3조”로 하고, 동조제10호중 “국민학교”를 “초등학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----- ----- --.
1. 내지 5. (생략)	1. 내지 5. (현행과 같음)
6. “사용자”라 함은 <u>제4조의</u> 사용자허가를 받은자를, “사용료”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	6. ----- <u>제3조의</u> ----- ----- -----
7. 내지 9. (생략)	7. 내지 9. (현행과 같음)
10. “어린이”라 함은 <u>국민학교</u> 학생과 6세이상 13세미만의 자를 말한다.	10. ----- <u>초등학교</u> ----- ----- -----
11. 내지 14. (생략)	11. 내지 14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부 칙</u>
	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